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이라 함)의 상한을 매출액의 5%(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표 4 중 “(제15조제1항 관련)”을 “(제15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1.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매출액의 5/100
15.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의 2/100	-	-
16.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신설>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② (생 략)	③·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7363